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5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안상훈 · 이성권 · 임이자
최보운 · 백종현 · 박덕흠
고동진 · 신동욱 · 인요한
김미애 · 김소희 · 정연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u>
<u><신 설></u>	3. <u>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 항</u>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 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